

투자권유지침

제정 : 2009.05.04

개정 : 2015.12.21

전면개정 : 2022.09.27

개정 : 2023.04.14

개정 : 2024.03.01

개정 : 2026.0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 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 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 감독규정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성 상품” 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 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② “대출성 상품” 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③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④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2.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④ 금소법 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 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법인, 겸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 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 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2. 유의사항: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 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 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임직원 등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 또는 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1호 또는 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자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⑤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또는 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 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 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 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 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 상태 등 변경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 상태, 투자 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7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 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 (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 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 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2. 유의사항: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

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 여부 등 확인서 작성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⑤ 임직원 등은 제5항 1호 교부대상자의 투자자에게 제5항 2호 대상상품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교부대상자: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ELS, ELF, ELT, DLS, DLF, DLT

⑥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 ①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8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

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 권유 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ㄱ)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ㄴ)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ㄷ)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 (ㄱ)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ㄴ)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다. 나.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2)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 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 · 물품 · 편의 등
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3. 금소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투자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4. 투자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투자자로부터 요청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투자자
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
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
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 (이하 “계열회사 등” 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
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
다.

2.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 등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른 목표시장의 설정기준에 부합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⑥ ⑤에도 불구하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가 스
스로 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정
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를 징구하는 경우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
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
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온라인거래 시에는 회사가 정하

는 내부 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¹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 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④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인식 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

¹ 확인서 징구건수, 확인서 징구건 중 민원발생 건수 등

의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 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 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 ·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⑦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⑧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 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⑩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⑪ 회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상품구조의 정확한 이해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숙려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창구에서 투자권유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 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국가의 거래제도 · 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시장 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해지 여부, 환해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해지비율, 환해지 대상 통화, 주된 환해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해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해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 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해지 비율을 달리(예: 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 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해지 여부 및 해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 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

위험 해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

제15조의2(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②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③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 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 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④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⑤ (중도 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⑥ 사채의 순위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별지 제6호]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②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지 제6호]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의1(계약서류의 교부)

-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2(청약의 철회)

-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 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가.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라.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②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 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나.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③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행 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회사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①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②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③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④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① 과당매매의 권리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 시 권리내용의 타당성 여부
- ②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리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부당한 권리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

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 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매매 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 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 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리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 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 명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 예탁을 받는 행위
- ②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 ·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 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임직원 등은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 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 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 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 배분 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3.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3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 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미

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채권의 장외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1항에 따른 설명시 채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명일 전영업일 기준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2. 채권의 매매수익률, 매매단가
 3.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의 차이 및 비율
 4. 채권 투자 특징으로서 채권 수익률과 투자 위험의 관계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
- ② 임직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
 2.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3. 고객이 매도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증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4. 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간과 채권만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③ 임직원 등은 과거에 투자권유하였으나 현재는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투자자 보호 사유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상세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적용 범위 등)

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이 지침의 직접 판매와 관련된 사항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2024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 6 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은 ‘24.3.1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4.3.1일 이후 동 가이드라인 ‘5. 위험등급 산정시기’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지침은 2026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항목

대분류	질문 예시	비고
재산상황	1. 월소득 대비 투자 가능한 자산의 비중 1) 10% 이하 2) 30% 이하 3) 50% 이하 4) 70% 이하 5) 70% 초과	적립식 투자시 고려할 항목
	2. 여유자금 보유여부 1) 3개월분 미만 2) 3개월분~6개월분 3) 6개월분~9개월분 4) 9개월분~12개월분 5) 12개월분 초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가계지출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확인
	3. 월소득 현황 1) 50만원 이하 2) 1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5) 500만원 초과	
	4. 총 자산규모(순자산) 1) 1억이하 2) 5억 이하 3) 10억 이하 4) 50억 이하 5) 50억 초과	
	5. 총 금융자산(부동산제외) 중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가능한 비중 1) 10%이하 2) 30%이하 3) 50%이하 4) 70%이하 5) 70%초과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경험 (취득 또는 처분)</p>	<p>6.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ELW <input type="checkbox"/>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 <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펀드 <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 <input type="checkbox"/> 신탁 <input type="checkbox"/> 기타</p> <p style="text-align: center;">[]</p>	
	<p>7.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p>	<p>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고 판단하여 일정부분 설명 의무 간소화 가능</p>
	<p>8.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없음 2) 1년 미만 3) 3년 미만 4) 5년 미만 5) 5년 이상 	
	<p>9.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경험</p> <p><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p> <p>10. 투자 목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해지 목적 2)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3)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4)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5)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투자목적 (거래목적)	<p>※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p>	
	<p>11.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2)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3)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p>12. 투자자금의 성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필수자금 2) 특수목적 자금 마련 3) 여유자금 	
금융지식 수준/ 이해도	<p>13. 금융지식 수준/이해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2)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3) 과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p>15. 현재 투자목적을 고려한 원금보존태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 추구 2)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 추구 또는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 추구 	<p>‘원금보존 추구’ 답변시 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투자상품(예: 위험등급 6등급 금융상품 등)이 아닌 상품은 투자권유 불가</p>
	<p>16. 손실감내 수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금보존 추구 2) 10% 이내 손실 감내가능 3) 20% 이내 손실 감내가능 4) 50% 이내 손실 감내가능 5) 70% 이내 손실 감내가능 6) 전액손실감내가능 	<p>세분화된 손실감내수준은 필히 파악 필요</p>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계약기간)	<p>17. 계약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 3년 미만 5) 3년 이상 	<p>현재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예정기간</p>
연령	<p>18. 연령</p> <p><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6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p>	

취약투자자 여부	<p>19.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p> <p>(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문맹자 등 <p>* 취약투자자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파악</p>	<p>*취약투자자 해당 여부는 임직원 등이 판단하여 기입함</p>
-----------------	--	--------------------------------------

[투자자성향 분류]

투자자 성향	비고
<input type="checkbox"/> 위험회피형	
<input type="checkbox"/> 안정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적극형	
<input type="checkbox"/> 위험선호형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00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 제 2 호] (법인)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 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투자자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 정보 항목]

1. 고객님께서 운용하려는 자금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① 잉여자산 ② 사업소득 ③ 장기부채(1년 이상) ④ 개인(직원포함)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⑤ 단기부채(1년 이하)
2. 고객님께서 운용하려는 자금은 자본총계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① 10% 미만 ② 10% 이상 ~ 20% 미만 ③ 20% 이상
3.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4.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증복응답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5.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수준 :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②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③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④ 매우 높은 수준 :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6.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p>① 10% 이하</p> <p>② 10% 초과 ~ 20% 이하</p> <p>③ 20% 초과 ~ 30% 이하</p> <p>④ 30% 초과 ~ 40% 이하</p> <p>⑤ 40% 초과</p>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p>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p> <p>② 10% 이하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p> <p>③ 20% 이하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p> <p>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p>
8.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년 월)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 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일자 : 년 월 계좌번호 또는 실명확인번호 :

고객의 성명 :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 위임시 기재사항

대리인성명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	------	---------	------

본인은 대리인에게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신청인(본인)

상담자명 (서명/인)	유선통화 시간 :
----------------	-----------

[별지 제 3 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 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 4 호]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또는 투자자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게 금융회사는 투자권유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절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위험선호형	적극형	성장형	안정성장형	위험회피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원금보존 추구 여부1)	(예 / 아니오)
	손실감내수준2)	()
	투자예정기간3)	()

※ 안내사항

-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경우 투자권유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됩니다.
-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손실감내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투자권유가 제한됩니다.
-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투자예정기간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상품구조상 만기까지 환매가 제한되는 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은 투자권유가 제한됩니다.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 향후 00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일자

. 고객의 성명: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서명/인)

※ 투자자정보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회사의 경우에 해당함

[별지 제 5 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	-------------------------------	--------------------------------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_____

외화자산 총계: _____

부채 총계: _____

외화부채 총계: _____

연간 수출총액: _____

연간 수입총액: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_____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해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해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직급:	성명:	
관련경력:	관련 자격: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전문가 수준):	종:	하: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직급:	성명:	
관련경력:	관련 자격: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전문가 수준):	종:	하: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아니오:
----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 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 향후 OO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직위)
(법인명)

(서명/인)

회사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_____ 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00회사)
(담당자)

(서명/인)

[별지 제 6 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²을 제외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시행령 § 13②

2.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하 「판매회사」)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 19①제1호나목3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 12②제3호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³에 따른다.

3. 위험등급 체계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4. 위험등급 산정방식

□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⁴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III.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관계법규] 금소법 § 19①제1호나목3, 시행령(§ 13③) 및 감독규정(§ 12)

① 시장위험⁵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III.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또는 그 이상)로 산정한다.

² 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³ (예) 신상품은 상품출시 관련 의사결정 단계에서 위험등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준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선정한 표본 상품을 대상으로 등급산정 방법론 및 적정성을 검증하며, 이를 위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 마련

⁴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⁵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 ② 신용위험⁶ 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등급(저위험)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 ⁷ , AAA~AA-	A+ ~ A-	BBB+~BBB-	BB+~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III.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④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⁸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 환율위험에 대한 해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⁹은 설명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¹⁰으로 한다.
- ⑦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⁶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⁷ 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⁸ 외화표시 과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

⁹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

¹⁰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위험등급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III.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 제2호

II.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해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 | |
|---|
|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2. 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¹¹ 사용)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레버리지·인버스 ETF¹²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¹³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¹¹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¹²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¹³ (예)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파생결합증권

- (종합등급)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4>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4>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분 ¹⁴	MR1 (고위험)	MR2	MR3	MR4	MR5	MR6 (저위험)
CR1(고위험)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저위험)	1	2	3	4	5	6

-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예시)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고,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5등급*을 부여
 * 원금 부분보장비율 수준에 따라 등급 세분화(95% 이상 5등급, 90% 이상 95% 미만 4등급, 80% 이상 90% 미만 3등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예: 25%)을 초과하는 경우

¹⁴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 (원금손실조건)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60% 이상)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베리어 요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70%)
-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밖의 판매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조정 가능

- 상장지수증권(ETN)은 1~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일정요건¹⁵을 충족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주식 등)

-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5. 채무증권

-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회사채¹⁶는 <표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등급¹⁷ 상향)하고,
 -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서에 기재한다.
 -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 조건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정금전선택

- 특정금전선택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선택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¹⁵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¹⁶ 「자본시장법」 제4조③ 및 ⑦ 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¹⁷ 예)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

-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해지 목적으로 파생상품¹⁸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일임계약

-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해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

-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¹⁸ 해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④ 후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별지 제 7 호] 적합성(적정성) 판단 방식

(방식1)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 점수화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 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 구분하여 파악 가능함
→ 이 경우,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 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를 각각 점수화하여 적합성 판단에 활용할 수도 있음

<장점>

- ▶ 객관화된 답변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이 용이함

<단점>

- ▶ 배점이 맞지 않을 경우 답변 결과가 투자자의 실제 투자성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 투자자에게 중요한 특정 정보가 투자권유시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가능

(방식2) 추출(Factor-out) 방식

-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정하지 않고,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별하는 방식
 - (항목-상품 매칭) 각 항목별로 투자권유에 적합한 상품들을 미리 정해둠
 - (적합상품 선별) 각 항목별로 차례대로 답변한 결과에 따라 요건에 충족되는 상품들만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상품리스트를 투자권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 질문1)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매우 높음’ → 모든 상품 권유가능 이해도 ‘보통’
→ 파생상품 및 구조가 복잡한 구조화증권 배제
 - * 질문2) 기대수익률이 ‘예. 적금 수준’ → 파생상품, 주식, 주식형펀드 등 배제
→ 질문을 단순화하고 질문 별로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의 수가 적어야 적용이 용이함

<장점>

- ▶ 비교적 단순한 질문을 통하여 투자권유가 가능한 모든 상품리스트를 곧바로 볼 수 있어 창구에서 활용이 편리함
- ▶ 투자자 정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되므로 추후 불완전판매문제 발생 가능성성이 낮음

<단점>

- ▶ 판매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질문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방식3) 혼합 방식

- 점수화 방식(방식1)과 추출 방식(방식2)을 혼합하여 사용함
-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 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 구분하여 파악한 후,
 - 투자자의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에 대해서는 점수화 방식(방식1)을 활용하여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부합하는 유형의 상품군을 결정함

- 위에서 결정된 해당 유형의 상품군 중에서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의 각 항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출함(방식2)

* 예)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에 대해 점수화 방식으로 파악한 결과 ‘저위험-저수익형’에 해당하는 상품군이 적합

→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목적이 ‘사업자금’이고 투자 예정기간이 ‘3개월’이라면 ‘저위험-저수익형’에 해당하는 상품군 중에서 MMF만 투자권유 가능함

<장점>

- ▶ 투자자의 현재 투자자금의 목적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점수화 방식보다 불완전판매 문제 발생 가능성 줄어들 수 있음
- ▶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분석해야 하는 기준이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만 축소되므로 추출방식에 비하여 시스템이 덜 복잡하고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단점>

- ▶ 현재 투자자금성향에 대하여는 투자권유 시마다 확인하여야 하므로 투자성향 점수화 방식보다는 다소 절차가 복잡함

(방식4) 상담보고서 활용 방식

- 투자자와의 상담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 (상담과정 및 결과 기록) 상담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 정보와 함께 상담의 결과로 특정한 권유가 이루어진 이유를 상담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장점>

- ▶ 투자자와의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직원의 경험 및 노하우의 활용이 가능함
- ▶ 투자자의 재산, 포트폴리오 현황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심층적인 상담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 단일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에 적합한 점수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신탁·자문·일임·포트폴리오투자 등에 적합함

<단점>

- ▶ 판매직원의 능력에 따라 상담수준 및 투자권유 결과가 결정되므로 판매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됨

□ 세부 프로세스

- 상담 결과에 따른 투자자성향 파악 방법 및 성향에 따른 투자권유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방침 (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에 대응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유형을 정하는 등)을 정함
-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다음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후 적합한 상품 또는 자산배분(Portfolio)을 제시함

상담보고서 활용시 파악할 투자자정보 항목 예시

【개인정보】

- ▷ 투자자의 성명, 나이, 가족관계(부양가족 여부 등) 등에 관한 답변 사항

【투자목적 및 투자기간】

- ▷ 투자자의 투자목적(정기적 수입, 은퇴자금, 교육자금, 자산증식 등)과 해당목적에 따른 예상 투자기간 등에 관한 답변 사항
- ▷ 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투자경험 유무 및 투자기간 등

【재산상황】

- ▷ 투자자의 투자금액, 투자금액이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자산현황(금융자산, 부동산 등), 수입원 (고정수입원 유무, 직장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월수입, 지출현황 등),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상태에 대한 예상 등에 관한 답변 사항

【투자경험 및 지식, 투자권유 의존도】

- ▷ 투자자의 투자경험("파생 상품 등"을 포함하여 기존 투자했던 금융상품 유형 및 투자기간 파악), 금융상품 투자에 관한 지식수준, 투자결정시 전문가에의 투자조언 여부 등에 관한 답변 사항

【위험에 대한 태도】

- ▷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및 손실률에 대한 감내수준, 시장상황(예 : Kospi 지수 추이)에 따른 기대 수익률(가상의 수익률 안을 여러 개 제시), 큰 폭의 시장하락 또는 장기적인 시장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별 누적수익률에 대한 선호도(가상의 투자안을 여러 가지 제시함), 5년 이상의 투자기간에 대한 가상의 기간별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결정(투자자금 전액 출금, 일부출금, 추가매입, 보유 등) 등에 관한 답변 사항

【기타 사항】

- ▷ 투자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특이정보(2년 후 이민계획, 자녀의 대학 입학, 자녀의 유학계획 등)를 기재함

상담보고서 작성 예시

예시1)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은 투자자가 이번 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으로서, 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으로 00년 00월이 만기인, 원금대비 손실이 20%로 제한되는 00 ELS 00호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시2)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은 투자자가 “금융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식시장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 35세의 투자자로서 매월 급여(약 400만원 수준)중 100만원 정도를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 시장 수준의 이익을 내기를 바라는 투자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투자자는 기간을 두고 금융투자상품이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자산배분으로 매월 100만원씩 oo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시3)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은 투자자가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면서도, 자녀들의 대학교육 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의 투자금을 장기적으로 약간 위험하더라도 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자산배분으로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원은 낮은위험 상품인 oo국공채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향후 3년 후부터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보이는 자녀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100만원 정도를 oo혼합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별지 제 7-1 호] 적합성 보고서

※ 회사별 기준 서류체계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 가능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	-------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

※ 실제 문항별 고객답변결과 기

재

--	--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예) ○○○형은 투자성향입니다. ※ 회사가 분류한 투자성향의 정의
투자권유 상품	(예) ○○증권 제×××회 파생결합증권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예) 고객이 상품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핵심 유의사항	※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등 필요사항 기재)

[별지 제 8 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본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회사는 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 및 영업점 규모, 고객 분포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령투자자에 대한 적정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가 수립될 수 있도록 회사별 사정에 맞게 세부내용을 수정·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합니다.

-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의 연령을 보다 낮게 정의할 수 있음
- ▶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하는 것을 권고함
- ▶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방법을 정할 것을 권고함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 ▶ 고령투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해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 창구의 수는 지점 규모나 인력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령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도 이용 가능
- ▶ 전담창구에는 나중에 고령투자자 또는 보호자와 분쟁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녹음·녹화시설 등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전담창구 배치직원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 근무연한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 ▶ 전담창구에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지점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팀장은 배제 필요
- ▶ 고령투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자체

※ 사리분별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합니다.

- ▶ 전담부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 ▶ 전담인력은 소비자보호 업무에 경험이 많은 일정 연한 이상의 직원을 배치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 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 ▶ 일반적으로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구조화증권 등을 들 수 있음
 - * (투자권유 유의상품 예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 ▶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빈번히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더라도 상품이 널리 주지되어 있고 시시각각 가격변동에 따른 거래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상장된 상품도 빈번히 거래되지 않는 상품(예: 상장된 깊은 외가격 옵션, 구조화증권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 관리직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필요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균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이 추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 가능
- ▶ 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3 ~ 4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다만, 이러한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접촉 기록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유지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5)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합니다.

-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른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령투자자에 관한 위험요인 점검 항목을 추가* 점검
 - * 예)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고령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6) 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7) 계약체결에 대한 지정인 확인(지정인확인서비스)

- 회사는 고령투자자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령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중에 고령투자자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고객의 계약체결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고령투자자와 함께 숙고하여 줄 것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 회사는 지정인확인서비스 가입방법, 지정인안내, 안내이행에 대한 증빙 확보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건에 맞게 적절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 특히, 고령투자자 전담 창구 또는 콜센터 전담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있음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

-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한 경우
- 과도한 신용거래가 발생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 최근 주문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예: 투자자성향 상향 등)이 있는 계좌
-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계좌

▶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 필요

▶ 조력자를 지정해둔 경우라면 조력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실무적으로는 창구에서 고객이 녹취전화로 조력자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하여 동의내용을 녹취해두는 것 이 바람직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혼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체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회사가 투자권유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고객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이의 판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고객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
* 서명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별도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상품가입신청서 상의 본인 서명 옆에 조력자 의 서명을 받아두면 될 것임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후모니터링 강화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해피콜 대상을 내규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초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에는 반드시 실시
▶ 다만, 고객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거나 관리직 직원이 판매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한 경우(“3.(4)” 또는 “5.(2)”)에는 해피콜을 생략 가능

6. 상담내용 등의 기록 · 유지

-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 · 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는 좋습니다.

[별지 제 9 호] 적합성 판단 방식(장외파생상품)

▶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5]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가. 금리스왑
 -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가. 금리. 통화 스왑
 - 나. 옵션 매수. 매도
 -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별지 제 6 호]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위험등급 체계를 참조할 것

*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 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별지 제 10 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준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 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문인력 개입관련 정책에 따라 “5.”는 표기 생략 가능)

[별지 제 11 호]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청약 철회 대상	
○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input type="checkbox"/> 투자성 상품 : (※ 회사별 세부사항 기재 가능) <input type="checkbox"/> 대출성 상품 : (※ 회사별 세부사항 기재 가능)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년 월 일
2) 계약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 주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기타 회사별 기재 필요사항)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별지 제 12 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참고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안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회사별 기재 필요사항)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별지 제 13 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고객 통지 대상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 21)
회사의 판단 결과 :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 · 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 · 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회사별 기재 필요사항)	
년 월 일 NH-Amundi자산운용	